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목 차

1. 전문	03
2.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하여 미디어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원칙	04
3.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 사진 촬영 시 준수사항 - 동영상 촬영 시 준수사항 - 언론보도 및 홍보물 제작 시 준수사항	06
4. 상황별 가이드라인 - 빈곤 · 기아 · 질병 상황의 아동 - 장애를 가진 아동 - 학대와 착취에 노출된 아동 - 노동에 동원된 아동 - 인도적 위기 상황의 아동 - 더 알아보기	08
5. 사례모음	14
6. 동의서 및 체크리스트 -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서 양식(국문, 영문) -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관계자 서약서 양식 -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기본 체크리스트	21
7. 참고자료	26



소개 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의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가 개발도상국의 아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할 때 언론인 및 보도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아동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는 여러 언론보도에서 아동은 가장 자주 등장하는 보도 대상입니다. 분쟁 지역과 빈곤 국가에 거주하는 아동은 사회적 약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디어는 개발도상국의 아동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그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에서 커다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미디어 가이드라인은 기자, 촬영감독, 사진작가 및 NGO 관련 종사자 등 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보도물의 취재, 제작 과정에서 아동이 처한 상황의 개선에 기여하고 아동의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제작됐으며, 아동을 중심으로 둔 구호개발NGO인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상 가나다 순)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였습니다.

미디어와 아동인권의 관계

언론은 인권을 증진하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침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언론인 및 아동에 대한 언론 보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인 및 아동의 언론노출을 돕는 사람들은 공적인 이익을 위해 더욱 높은 윤리의식과 인권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미디어는 여론을 조성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며, 특히 아동과 같은 특정 집단을 보도하는 방식은 사회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선의를 기반으로 한 보도 및 홍보자료가 보호대상인 아동의 권리를 도리어 침해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자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절대적인 약자나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권리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인격체로서 보도되어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가이드라인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선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사람은 유년기에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으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아동 권리에 대한 목표들은 아동의 권리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아동의 권리를 인지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져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하여 미디어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원칙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미디어 관계자란?

이 가이드라인은 기자, PD, 프로그램 제작자 및 기업의 대외홍보 담당자, NGO 직원 및 NGO 관련 해외사업장을 방문하는 사람 등 아동에 대해 취재·보도·홍보·모금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관계자의 언론 활동에는 관련 SNS 활동까지도 포함됩니다.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

미디어 관계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원칙들은 미디어 관계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취재(인터뷰),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도의 전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들입니다. 이 원칙들을 준수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특히 가장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활동의 전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고자 합니다.

1.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

미디어 활동의 전 과정에서 모든 아동과 보호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2. 미디어 관계자의 사명과 책무 준수

미디어 관계자는 아동과 관련한 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미디어 활동이 아동의 권리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이 당면한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맥락까지 파악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3. 아동 및 보호자의 의사 존중

촬영 전에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전 동의는 아동 및 보호자가 촬영자나 다른 누군가에게 간섭이나 유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며, 촬영자는 이들에게 자신의 신분 및 촬영의 목적과 활용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은 촬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4. 아동의 사생활 보호

아동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보유합니다. 미디어 관계자는 촬영 과정과 보도 이후까지 아동의 신변 보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5. 적절한 촬영 환경 보장

미디어 관계자는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촬영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촬영 관계자와 촬영의 대상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촬영으로 인한 사후 피해 예방

보도 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도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파급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 대상 아동의 상황에 대해 보도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7. 사실에 기반을 둔 촬영

미디어 관계자는 아동이 당면한 상황과 아동의 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동의 정보와 촬영 결과물을 특정한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8. 아동 및 보호자의 능동적 묘사

미디어 관계자는 아동과 보호자를 무기력한 수혜자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능동적 주체로 묘사해야 합니다.

9. 현지 지역 문화의 존중

미디어 관계자는 아동이 속한 현지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현지 문화의 관점에서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10. 국내외 협력기관 및 직원 존중

한국의 협력 기관과 촬영 국가 내 동행하는 현지 기관 직원 등 미디어 활동의 협력 파트너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사진 촬영 시 준수사항

- 사진은 콘셉트에 맞춰 촬영하되 가급적 촬영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 찍습니다.
- 아동의 이미지가 출판, 광고, 신문, 온라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사전에 해당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진 활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분명한 동의를 구합니다.
- 촬영 중 아동이 촬영 거부 의사를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촬영을 중단합니다.
- 해당 지역아동들을 단체 촬영해야 할 경우, 아동의 인원수를 조절하고 모두에게 이미지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한 후 서면 혹은 구두 동의를 받습니다.



동영상 촬영 시 준수사항

- 촬영 전 촬영 인력에게 해당 사업과 현지 지역사회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야 합니다.
- 간단한 현지어(기본인사 및 감사 표현)를 숙지하고 촬영 대상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 대부분 촬영을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촬영 전 시간을 할애하여 촬영 대상과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 사실에 기반 한 최소한의 연출이 필요한 경우, 그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에 반드시 동의를 구합니다.
-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을 재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평소 하지 않는 일을 연출해서는 안 됩니다.
- 인터뷰 시 주변 이웃들이 구경하지 않도록 촬영 현장을 통제해야 하며, 구경꾼들이 많이 모였을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촬영 의도를 설명하여 촬영 대상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촬영을 위해 아동을 의도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 인터뷰 시 제작진을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개방되지 않은 장소를 택해 아동이 심적으로 안정된 상황 속에서 촬영합니다. 여아의 경우 가급적 여성이 인터뷰해야 합니다.
- 현지 풍습에 맞춰 촬영을 진행하되, 공동체 위계질서가 강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되도록 마을 어른(이장, 촌장 등)에게 먼저 인사하고 촬영 의도를 설명한 뒤 촬영을 시작합니다.
-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 대신 옷을 잡아당기거나 신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 야간 촬영은 반드시 현지 직원 및 아동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며, NGO는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촬영 환경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무리한 재촬영을 강행하지 않습니다.
- 민감한 장소에서는 정부의 허락 없이 촬영하지 않습니다. (예:국립 병원 등)
- 숨진 가족의 이야기를 아동이 직접 말하는 상황을 연출해야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아동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지 점검합니다.



언론 보도 및 홍보물 제작 시 준수사항

- 촬영된 아동의 이미지를 조작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편집하지 않습니다.
- 아동의 이름은 가명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아동의 신분을 명확하게 노출해야 할 경우에는 아동 및 보호자에게 보도 목적을 정확히 전달하여 동의를 얻은 후 실명을 기재합니다.
- 미디어를 접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보도는 지양합니다.
- 편견을 유발하는 특정 인종의 이미지 사용은 피합니다.
- 아동을 동정 및 시혜의 대상이나 약자, 피해자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 아동을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자로 표현합니다.
- 아동 사례를 왜곡, 은폐, 과장, 축소하지 않으며 정확하고 진실되게 보도합니다.
- 아동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단어나 묘사를 삼가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합니다.
- 아동과 해당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형성할 수 있는 보도는 하지 않습니다.
- 보도 후 아동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보도는 하지 않습니다.
- 촬영 대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제작자가 판단해 신원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를 반드시 실시합니다.
- 아동 이슈에 대하여 보도 시, 아동이 처해 있는 현 상황에만 집중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도 함께 보도합니다.
- 온라인으로 보도 시, 사용하는 콘텐츠가 2차 노출되지 않도록 보도 기한 및 배포 채널 제한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사전 협의 후 보도합니다.
- 현장에서 촬영한 이미지나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리지 않으며, SNS를 홍보채널로 활용해야 할 경우 아동의 동의는 물론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합니다.
- 과거에 촬영된 내용을 재방영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특히,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구호 상황일 경우 이미 해결된 일이 방영되면,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아동이 촬영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촬영 전에 촬영 일정에 대해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상황별 가이드라인

[빈곤·기아·질병 상황의 아동]



촬영 및 보도 가이드

- 아동이 빈곤이나 기아의 상징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합니다. 절박한 위기상황보다는 해결책을 강조합니다.
- 질병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질병에 대한 현상만 다루기보다는 원인과 치료 방법도 함께 명시합니다.
- 굶주리고 병든 아동의 이미지를 이용해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탈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개발도상국의 아동과 가족이 선진국의 원조에만 의지하는 듯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 빈곤과 기아, 질병에 대한 자료를 활용할 때는 믿을 만한 기관의 통계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 극심한 상황을 연출해서는 안 됩니다.
- 빈곤과 기아, 질병과 관련해서 아동을 다룰 경우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질병의 발생 원인과 증상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도록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 질병에 대한 근거 없는 '괴담'이 퍼지지 않도록 사실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들여다보기

빈곤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 고착화시키며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환경을 손상시킵니다. 빈곤한 가정의 아동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착취와 학대, 폭력, 차별, 따돌림 등의 위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아동기의 빈곤은 삶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며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아는 음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있어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가난하면 음식을 살 수 없고, 먹을거리를 기를 땅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가뭄이나 홍수, 산림 벌채, 토양 오염 등으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전쟁으로 살던 집과 땅을 떠나면 곡식을 심지도, 자란 곡식을 거두지도 못합니다. 지나친 목축으로 토양이 오염되면 식량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빈곤 때문에 수백만 명의 아동이 충분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질병에 걸려 목숨을 잃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아동들은 대부분 저렴한 약과 백신으로도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폐렴, 설사병, 말라리아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미디어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아동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도해야 합니다(빈곤·기아·질병을 겪는 원인과 결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의 생존과 발달, 질병 치료 및 건강 회복을 위해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조사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



촬영 및 보도 가이드

- 장애 아동을 비하·차별하는 표현을 하거나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지체장애 비하 용어: 절름발이, 불구, 병신; 시각장애 비하 용어: 장님, 소경; 청각장애 비하 용어: 귀머거리, 병어리; 기타: 언청이, 곰보 등
-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취재할 때 차별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장애 아동도 아동 자체로 인정하고 취재해야 하며 장애를 부각시켜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들여다보기

장애 아동은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물리적·사회적 장벽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소외를 겪습니다. 장애의 종류, 사는 지역, 이들이 속한 문화와 계층에 따라 소외의 정도도 다양해집니다. 남녀의 성별 또한 소외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장애가 있는 여아는 장애가 있는 남아 또는 장애가 없는 여아에 비해 보편적 교육이나 직업 교육을 받을 확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때문에 장애 아동은 비장애 아동보다 가난할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똑같은 결핍을 겪는 아동 사이에서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수많은 문제와 도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장애 아동은 종종 열등한 존재로 취급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장애에 대한 차별은 자원의 사용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들을 소외시키는 형태로 나타나며, 심할 경우 장애를 가진 영유아를 살해하는 범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장애 아동에 관해 신뢰할 만한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아동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며 결국 여러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박탈은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어른이 된 이후에도 직업을 얻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장애 아동이 사회적 서비스와 기술에 접근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면, 이들은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장애 아동이 부딪히는 문제는 장애 자체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으로 인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장애 아동을 주제로 다룰 때에는, 편견을 갖지 않고 장애 아동의 성취와 잠재력을 강조해야 합니다.

[학대와 착취에 노출된 아동]



촬영 및 보도 가이드

- 학대와 착취의 현상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빈곤, 인도적 위기, 사회적 관념 등)을 찾아보도록 노력합니다.
- 학대, 착취에 대한 보도 시 사건이 주는 충격을 과장하지 않으며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합니다.
- 인터뷰 및 사진촬영을 할 때, 반드시 아동의 동의를 구하고 신원을 보호합니다.
- 불안, 우울, 혹은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아동의 상태를 고려하여 인터뷰 및 촬영을 진행합니다.
- 학대와 착취로 인해 불안감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성인 앞에서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 아동이 본인의 이야기를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 아동이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진 촬영의 방법과 인터뷰 구성에 따라 아동이 범죄자 혹은 범죄의 자발적 참가자로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 아동이 경험한 학대와 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해서 아동이 부담과 압박,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통역사는 대화 내용을 왜곡시키지 않고 현지의 문화와 그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통역해야 합니다.



들여다보기

아동에 대한 학대와 착취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동반하는 행위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일어납니다. 학대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신체적·심리적·정서적·성적 학대를 이야기합니다. 착취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로 아동노동 등의 경제적 착취와 성적 착취를 포함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 아동노동 현장, 인도적 위기 상황 등 어디든지 아동학대와 착취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해자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교사, 아동이 일하는 곳의 고용주, 또래집단 등 아동 주변의 모든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학대와 착취의 유형은 훈육, 체벌, 방임에서부터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무장단체에의 동원,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일컬으며 특히 여아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적 폭력인 성폭력, 조혼, 할례도 포함됩니다.

신체적·정신적 성장기에 있는 아동은 성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보통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학대와 착취는 훈육과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기도 하며, 아동 스스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빈곤이나 인도적 위기 등으로 가족의 울타리 밖에 있는 아동이나 여아, 소수민족 아동, 난민 아동, 장애 아동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의 경우, 폭력을 동반한 학대와 착취를 경험하기 쉽습니다.

아동학대와 착취는 아동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선 아동은 즉각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아는 성폭력이나 할례, 조혼으로 인한 이른 출산 때문에 성병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며 심한 경우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또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 우울, 공격적 성향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언어, 문제해결, 인지능력과 같은 뇌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미디어 관계자는 방임에서부터 신체적·정신적 형태에 이르는 아동학대와 착취의 넓은 범위를 인지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학대와 착취가 아동,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아동에게 끼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인터뷰나 촬영 및 보도 시 아동이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노동에 동원된 아동]



촬영 및 보도 가이드

- 노동하는 아동의 신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 아동이 노동을 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 조사하되 왜곡하여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 아동의 노동이 불쌍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인상을 무조건 심어주기보다는 아동이 자신의 노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동의 노동현장에 대한 촬영 및 취재가 아동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아동 매춘이나 아동 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해 인터뷰할 때 반드시 아동과 같은 성별의 프로듀서와 통역사, 카메라 감독이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성별의 NGO 직원이 동행해야 하며 아동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면을 피해 촬영해야 합니다.



들여다보기

빈곤은 아동노동의 근본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빈곤 가정의 아동은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노동으로 인해 교육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면 가난에서 점점 더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열악한 교육 시설, 교육 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물가 상승, 기후변화, 내전, 가족과의 분리, 여성과 아동의 낮은 지위 등으로 더욱 심화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아동의 노동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아동이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아동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아동은 대개 농장이나 공장, 항구, 건축현장, 광산, 채석장 등에서 일하며 행상을 하거나 쓰레기를 주워 돈을 벌니다. 여아가 가장 많이 하는 노동은 자신이나 타인의 가정에서 집안일을 맡아서 하는 가사노동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이 매춘, 포르노그래피 또는 이와 유사한 노동으로 착취당하기도 합니다. 단속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거나 착취 또는 강제 노동, 노예상태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아동들이 강제로 유괴되고 팔리거나 속아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노동을 주제로 다룰 때에는 다양한 원인과 그 영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아동이 노동을 하게 된 이유가 자의적인지 타의적인지 살펴야 하며, 노동으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아동과 사회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인도적 위기 상황의 아동]



촬영 및 보도 가이드

- 해당 촬영 및 보도가 아동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항상 고려합니다.
- 인도적 위기 상황의 아동에게 충격이나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인터뷰는 삼갑니다.
- 아동, 부모, 보호자에게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이들의 사진이나 녹취(녹화)자료 사용 및 인용 시 사전에 동의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 아동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아동의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일기, 편지 등)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내용과 사진(영상)을 사용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여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 무력분쟁을 겪은 아동을 인터뷰 할 때, 작성된 정보는 보안이 보장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해당 국가를 제외한 다른 곳에 보관하여, 신원노출로 인해 아동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2차 피해가 예상되는 현·전역 소년병, 신체적·성적학대 피해 아동, 가해 아동, HIV/AIDS 감염 아동의 신원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아동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거나 상황을 과장하고 해당 아동을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하여 아동이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쉽게 무시될 수 있는 아동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합니다.



돌여다보기

아동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발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발생하는 위험은 아동의 삶을 위협합니다. 특히 홍수, 가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나 분쟁, 식량위기로 인한 기근 등의 인적 재난을 일컫는 인도적 위기는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장기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선 아동은 자연재해, 내전, 식량위기와 같은 인도적 위기의 즉각적 피해에 가장 취약합니다. 아동은 재난의 발생 과정에서 생명을 잃기 쉬울 뿐만 아니라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등의 질환에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재난으로 인해 식량, 식수와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면역력이 약한 아동이 가장 먼저 질병의 위협을 받습니다. 또한 재난 복구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폭력이 만연해지면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증가합니다. 특히 가족과 분리된 아동은 고문이나 폭력의 대상으로 지목되거나 무장단체에 연루되기 쉬우며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의 위험에도 노출됩니다. 특히, 여아는 인신매매나 성폭력의 위험에 더욱 취약합니다.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가족과 분리되거나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피해는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피해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만성적인 재난으로 인한 영양실조나 교육의 중단은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관계자는 인도적 위기 시 아동의 취약성과 그 즉각적·장기적 영향을 인지하여야 하며, 아동의 신변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적 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동권리 침해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가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 관련 국제규약

아래에 제시된 문서들은 '상황별 가이드라인'의 내용 작성에 기초가 된 국제규약 문서들입니다. 아래의 문서들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빈곤·기아·질병 상황의 아동

-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6조, 제24조, 제27조
- 유엔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5조
-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 12조

장애를 가진 아동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
-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25조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7조

학대와 착취에 노출된 아동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34조, 제38조
- 아동노동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협약:
 -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제138호): 15세 미만 아동노동 금지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제182호): 18세 미만 아동의 강제노동, 성매매, 약물 생산·밀매 등 금지
- 유엔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유엔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노동에 동원된 아동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2조
- 아동노동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협약:
 -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제138호): 15세 미만 아동노동 금지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제182호): 18세 미만 아동의 강제노동, 성매매, 약물 생산·밀매 등 금지
-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인도적 위기 상황의 아동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주요 원칙과 제38조, 제39조
-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대한 선택의정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612, 1820호
-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국제개발시민사회단체와 유엔 관계기구, 학계의 아동보호 전문가들이 함께 아동보호실무그룹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2012년 '인도적 활동 시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기준'과 교육을 위한 최소기준'을 마련.
- 인도적 활동 시 교육을 위한 최소기준 (Minimum Standards for Education): 전세계에서 인도적 위기 시 교육에 관하여 활동하는 정부 관계자, UN 기구, 비정부 기구, 연구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2004년 인도적 위기 시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최소기준을 마련.
- 분쟁지역 교육권 보호를 위한 'Lucens 가이드라인': 분쟁지역에서 교육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연합체 (Global Coalition to Protect Education from Attack)가 분쟁상황에서 학교가 군사관련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지침을 개발.

사례 모음

- 본 가이드라인에 실려 있는 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사진은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인용된 것임을 밝힙니다.



부적절한 사례

• 특정 인종의 아동 이미지 사용으로 편견을 조장한 사례

일반적으로 언론 및 홍보모금 자료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처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유색인종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특정 인종의 아동이 울고 있는 모습을 사용해서 광고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동을 불쌍한 동정의 대상으로 묘사한 것이며, 특정 인종은 의존적이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편견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모금방송에게 수여되는 Rusty Radiator상을 수상한 어느 NGO의 모금 방송의 경우 건강한 백인 남성에게 안긴 연약한 흑인 아동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와 인종의 나약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연출을 위해 아동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킨 사례

어느 국제NGO는 어업활동에 동원되는 베트남 아동들의 노동현장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아동들을 수심이 깊은 강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아동이 강에 들어가는 것이 위험하여 하루에 몇 회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조언과 아동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작진은 현지의 조언에 따라 촬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연출을 위하여 아동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은 아동의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조치입니다.

• 상황 극대화를 위한 현실 왜곡 사례

국내 어느 방송사와 개발NGO는 에티오피아의 한 시골마을로 촬영을 나갔습니다. 그 마을에는 적절한 위생시설을 갖춘 식수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제작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알리고자 했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제작진은 소나 염소 등의 가축들이 이용하는 마을 주변의 작은 연못에 현지 아동을 데려가 물을 마시는 장면을 연출하고자 했습니다. 촬영 대상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물이 없어 연못의 더러운 물을 먹는 현지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해 결국 연출된 촬영을 강행했습니다. 촬영 대상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연출된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지의 아동을 인터뷰하는 동안 연출자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고자 아동에게 눈물을 흘릴 것을 거듭 종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동이 눈물을 보이지 않자 결국 아동을 꼬집어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동행한 NGO 직원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동의 눈물은 많은 시청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수 있지만 지나친 연출로 가공된 눈물은 '사실에 기반을 둔 촬영' 원칙에 어긋나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촬영 대상 아동과 사전소통 미흡 사례

국내 어느 개발협력NGO는 모금홍보 방송을 위해 필리핀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여아를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주인공을 보자마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동은 촬영을 위해 본인이 가진 가장 예쁜 옷을 입고 말끔하게 꾸민 상태로 제작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동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촬영 진행방향과 아동의 용모가 맞지 않아 제작진은 결국 아동에게 옷을 갈아입을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동은 제작진에게 “당신들은 나를 위해 촬영하는 것이 아니군요?”라고 말하며 다시 평소에 입던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본의 아니게 아동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 동네주민 협조 요청 미흡 사례

국내 어느 방송사가 촬영을 진행했던 르완다의 한 가정은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해외 방송사에서 촬영 나온 것을 구경하기 위해 그 집 주변으로 동네 사람들이 50명 정도가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모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촬영 현장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해당 가정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등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고 또한 가난한 가정이라는 인식을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일은 아동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촬영 아동에게 정신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며, 사전에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 개인 SNS에 왜곡된 현장사진 업로드로 인한 문제 사례

국내 어느 방송사 해외촬영을 동행한 후원자가 해당지역의 옛 풍습이었던 여성 할례와 관련된 사진을 찍고 개인 SNS에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재 그 지역에서는 할례가 금지되어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진을 올림으로써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나라를 여전히 미개한 나라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촬영에 참여했던 NGO 직원들이 해당지역 아동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개인 커뮤니티에 무분별하게 업로드했습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으나 아동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리기에 앞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 관심 유도를 위한 자극적인 이미지 게시 사례

최근 많은 NGO들이 홍보를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사용하여 홍보와 모금을 추진합니다. SNS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개인들이 빠른 속도로 문제 상황을 전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매체입니다.



하지만 SNS상에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극적인 사진을 사용하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아동을 순간적인 관심의 대상으로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적 상대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미지 사용 사례

국내 어느 신문사와 캄보디아에 취재를 나간 개발 NGO 직원은 기자의 요구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쥐를 먹는 것은 단백질 섭취를 위해 현지에서는 당연한 식습관이나 기자는 자극적인 기사 작성을 위해 이것을 혐오스러운 식습관으로 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반대하던 NGO 직원도 결국 이에 동의했고 그 국가는 쥐를 먹는 미개한 식습관이 있는 것으로 묘사 되었습니다. 문화적인 상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화와 국가를 매도하는 기사는 편견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합니다.

• 촬영을 위한 무리한 질병상황 노출 사례

국내 어느 방송사는 모금방송을 위해 모잠비크에서 팔에 피부질환을 겪고 있는 아동을 촬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송사 직원은 촬영을 위해 아동에게 다친 부위의 붕대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촬영을 위하여 아동의 상처가 감염될 위험을 초래한 행동이었습니다.



치료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은 괜찮으나 촬영만을 위해 상처를 보여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금을 위하여 자극적인 아동의 질병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며 필요 이상으로 절박한 위기상황으로 과장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인터뷰 진행 사례

태국에서 일어난 대홍수를 취재하기 위해 파견된 어느 방송사의 기자는 집에 물이 차 마을 대피소로 피난 온 14세 여아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인터뷰 진행 중 기자는 홍수로 인해서 여아의 이웃과 친구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해당 아동은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터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작진은 촬영을 강행했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하여 실종되거나 사망한 아동들의 일기장 등의 유품을 유가족의 허락 없이 방송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인터뷰와 보도는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 장애에 초점을 맞춘 보도 사례

남수단의 지뢰 제거 상황 보도를 위해 어느 방송사와 NGO 직원들은 지뢰로 인하여 다리를 잃은 한 아동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제작진과 NGO 직원은 아동의 장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 상황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여 아동이 입은 장애와 그로 인한 불편함을 집중 보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애 아동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아동의 장애가 아닌 아동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조기구에 의지한 장애인 사진은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의 폭을 넓히기보다는 장애의 상징으로 강조될 뿐입니다.



바람직한 사례

• 촬영 전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려 노력한 사례

어느 국내 방송사와 개발NGO는 베트남 아동들의 삶에 대해 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촬영 전 제작진은 촬영 대상인 아동에게 방송에 아동의 실명이 나가도 괜찮은지, 나가는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길 원하는지 먼저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또한,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판에 그림을 그려 “네가 나중에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며 아동의 눈높이에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실제 아동들은 자신이 어떻게 방송에 나오는지 모르고 촬영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아동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아동 묘사 사례

잠비아 시골로 취재를 간 취재팀은 빈곤한 가정상황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17세 여아에 대해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조부모와 살고 있는 이 여아는 교복과 학용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취재진은 이 여아를 ‘가난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의 이미지’ 대신 ‘꿈을 이루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이미지’로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송에서는 학교 가는 아이들을 뒤에서 쓸쓸하게 쳐다보는 아동의 모습 대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왼쪽 동영상 광고 속 여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아동의 목소리를 이용하여 아동이 직접 그리는 능동적인 삶에 대해 강조한 모금 광고는 편견과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으면서, 메시지를 적절하게 전달하여 Golden Radiator상을 수상했습니다.



◀ 출처: Plan UK

• 촬영 대상인 아동 신변보호 사례

국내 어느 NGO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소년병에 대해 촬영하기 위해 과거 소년병 경험이 있는 17세 남자아동과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NGO 직원은 소년병이라는 문제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아동의 정면 모습을 촬영하는 대신 뒷모습을 촬영했고 아동의 실명대신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아동에게 민감한 이슈를 다룰 때에는 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해 아동의 얼굴과 실명을 노출시키지 않는 등 더욱 각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출처: Save the Children

• 특수한 사례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보인 사례

방글라데시 지역의 성폭행 사례를 취재하기로 결정한 어느 국내 방송사의 제작진은 아동을 만나기 전에 사회복지사의 요청으로 피해아동과 사회복지사가 먼저 만나는 시간을 가져 아동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아동의 집에서 촬영할 때도 아동과 같은 성별의 NGO 직원과 PD, 카메라 감독만 참여하여 아동이 혹시 느낄 수도 있는 불안감을 최소화했습니다.

• 자극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은 관심 촉구 성공 사례

‘만약 영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이라는 주제로 제작된 아래 모금 광고는 영국의 한 가정의 행복한 일상에서 시작하여 짧은 시간동안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파괴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 출처: Save the Children

이는 시리아에 일어난 내전 상황이 다른 국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며 시리아 아동에게 일어난 일이 세계 다른 나라의 아동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모금 광고는 자극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사례입니다.

• 아동 학대 및 노동 문제의 구조적 문제 파악 성공 사례

네팔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위해 국내 개발 NGO 직원은 학대받는 아동을 만났습니다. 해당 아동은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노모에게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는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NGO 직원은 이것이 단순히 이 가정만의 일이 아니라 네팔 전체에 깊게 자리잡고 있는 아동 인권 침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아동의 사건을 취재하면서 네팔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동 인권 문제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캠페인 후 많은 사람들이 네팔의 아동 인권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도의 채석장에서 노동하는 아동들을 취재하던 신문사와 NGO직원들은 아동들의 비참한 상황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을 같이 보도하여 노동의 피해자가 아닌 삶의 희망을 가진 능동적인 주체로서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희망에 찬 아이들이 노동에 동원되어야 하는 인도의 구조적인 모순과 아동 인권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도함으로써 보도를 접하는 사람들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동의서 양식 및
체크리스트

아동 및 보호자 동의서 양식(국/영문)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관계자 서약서

기본 사항 체크리스트



- 동의서 및 서약서 양식은 촬영 목적 및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동의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미디어에 보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미디어 보도 동의서

나(아동)는 _____ 미디어와 _____ 단체 촬영 및 인터뷰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촬영에 협조할 것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를 해당 미디어와 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SNS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정대리인(보호자) 동의서

본인은 본인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아동 권리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명시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하고 미디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숙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명	인(서명)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인(서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아동/청소년과의 관계	

※ 아동의 개인정보는 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역시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의자: (인)서명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Image Usage Agreement

※ This consent is based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Privacy protection act」.

•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Media Exposure Consent

I, (Name of Child) hereby give (Name of Media) and (Name of NGO) consent to photograph and interview me, license the images and use the images in any media including online web sites and social network services for any purpose, which may include: among others, advertising, publishing and marketing.

• For parent/legal guardian

I, (Name of parent/legal guardian) , have read the Media Guideline and fully understand the contents hereof. I represent that I am the parent/legal guardian of the named child. For value receiver, I hereby consent to the foregoing material and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mentioned above.

Child	Name	(Signature)
	Contact	
Parent/legal guardian	Name	(Signature)
	Date of birth	
	Contact	
	Relation with child	

※ Information about the child and parent/legal guardian will not be used for other purposes other than stated above.

Date :

Name & Signature :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관계자 서약서

미디어는 여론을 조성하고 이끌어가므로 잘못된 보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잘못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의를 기반으로 한 보도가 도리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절대적인 약자나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권리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인격체입니다.

아동을 다루는 미디어는 올바른 시각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아동이 처한 실상을 알리고 그들의 권리를 증진해야 합니다.

미디어 관계자는 국제개발 현장에서 취재하여 보도할 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미디어 관계자 _____는(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취재 및 보도의 전 과정에서 위의 내용들에 동의하며,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하여 미디어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명 일 : 년 월 일

이 름 : _____ (서명)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 기본 사항 체크리스트

촬영 및 인터뷰 시		예	아니오	모름
1	당신(미디어 관계자)의 의도를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2	촬영이나 인터뷰 도중 아동이 불편함을 느낄 때에는 언제라도 촬영이나 인터뷰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아동에게 알렸는가?			
3	촬영 대상인 아동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는가?			
4	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였는가?			
5	아동의 이름과 사진 사용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구하였는가?			
6	아동이 당신(미디어 관계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는가?			
7	미디어 관계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 무리한 재촬영을 강행하였는가?			
8	아동의 이름 또는 사진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아동과 보호자(부모 등)에게 알렸는가?			
9	아동의 이미지를 조작하거나, 편견을 유발하는 특정 인종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였는가?			
10	촬영 중 아동이 촬영거부 의사를 표현할 경우 촬영을 중단하였는가?			
11	단체 촬영 시 아동의 인원수를 조절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미지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하고 서면 혹은 구두 동의를 받았는가?			

기사보도 및 이미지 사용 시		예	아니오	모름
1	아동의 이름 또는 사진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동료 및 편집자와 상의하였는가?			
2	아동의 이름은 가명처리 하되, 아동의 이익을 위하여 실명을 사용할 시 아동과 보호자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였는가?			
3	아동 이슈 보도 시, 아동이 처한 상황만이 아닌,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다루었는가?			
4	아동 또는 아동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형성할 수 있는 보도를 하였는가?			
5	아동에게 해가 되거나 혹은 추가적인 문제에 노출시킬 수 있는 단어나 묘사를 삼가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6	아동은 인터뷰 및 촬영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는가?			
7	미디어를 접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였는가?			
8	아동 사례에 대해 왜곡, 은폐, 과장, 축소하지 않으며 정확하고 진실하게 보도하였는가?			
9	온라인 보도 시에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해 보도기한 및 배포채널 제한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사전에 협의한 후 보도하였는가?			
10	현장에서 촬영한 이미지나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릴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였는가?			

참고자료(가나다순)

- 각 단체별 자료
 -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내부 미디어 제작 가이드라인 및 참고자료
- 해외자료
 -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arking progress against child labour〉(2013), ILO
 - 〈The Minimum Standards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 〈Child Rights & The Media: Putting children in the right guidelines for journalists & media professionals〉(2012), Child Protection Working Group
 -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for the United Nation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2006),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 〈Child Rights and the Media – Putting Children in the Right〉(200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 〈Imagine Famine〉(2005), Guardian
 - 〈The Media and Children's Rights〉(2005), MediaWise and UNICEF
 -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UNICEF
- 인터넷
 - www.unicef.org/magic/users/media.html
유니세프 아동 & 미디어 참고사례 사이트
 - www.rustyradiator.com
모금 방송의 좋은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선정하여 수상하는 Golden/Rusty radiator상 웹사이트
- 기타 자료
 - 인권보도준칙제정을 위한 세미나 (2011)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기자협회
 - 2013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주제분과 공동포럼 – 아동과 개발 분과 자료 중, 세이브더칠드런의 발제문
'인도적 지원에서의 아동권리보호: 국제개발 시민사회 단체의 경험과 제언'
- 논 문
 - 박지훈, 류경화 (2009) 스타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사회적 함의
 - 박지훈, 이진 (2011) 제3세계를 재현하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제작자와 수용자의 시선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발 행 처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37-11 TAF빌딩 4층

전 화 : 02-2279-1704

팩 스 : 02-2279-1719

홈페이지 : ngokcoc.or.kr

작 성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전지은, 이승현),

세이브더칠드런(김희경, 박선화),

월드비전(김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김보경, 김지수, 임혜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김나영, 옥정은),

KoFID(문도운), 프렌드아시아(고영운)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함께 작성한 단체
(가나다순)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unicef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Member of ChildFund Alliance



프렌드아시아

KoFID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는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한국개발NGO들의 협의체입니다.